

제3차 변호인단 접견록	
일시: 1986. 7.7.(월요일)	
장소: 인천소년교도소	
접견자: 변호사 이돈명, 조준희, 고영구, 홍성우 박원순	
1.2차접견후의 조사경위	
(1) 조사일지	
7.3 (목요일)	x 오전에 조사를 받고 귀소하였다가 다시 오후 6시에 검사실(남충현)에 나가 밤 11시까지 조사받음
	x 이날 고소인보충진술조서를 받았으며 오후 4시쯤부터 10분 내지 15분 가량 동안 문귀동과 대질이 있었으나 조서는 작성하지 않았음
	x 이날 밤에는 수사과장, 수사계장 등과의 대질이 이루어졌는데 상황실장의 인상착의를 말해 주었더니 박모라는 수사계장을 데려다 주어 상황실장이라는 완장을 찬 자가 그 수사계장임을 확인하였으며 동수사계장은 보호실에 권양이 있는 것을 지나가면서 한번 본 기억밖에 없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5회가량은 보았고 특히 검찰 송치시에는 권양에게 "너는

거짓말쟁이다" , " 수배자를 양턱리로 가르쳐
주어 허탕을 쳤다"는 등의 말까지 한 자였다.
× 또한 수사과장은 자신이 상황실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자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자였다.
7.4 (금요일) 오후 1시가량 김수장 부장검사실로 가서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받고 9시 30분에 귀소.
7.5. (토요일) 경찰관등과 대질신문
7.7. (월요일) 오전에 나가 조사를 받지는 않았으나 다수의
부천서 경찰관들이 들락거리는 것 같음
(2) 문귀동과의 대질신문 내용
× 7.3. 두사람과의 대질신문 당시 김사는 "이중에 한 놈,년은
죽일 놈, 죽일년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겠다" 고 하면서
두사람의 대화를 하게 함.
× 문귀동은 자신이 권양을 한번밖에 조사하지 않았으며
그나마도 세사람이 조사당시 끝까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시종일관 권양을 똑바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시신을 표연로
하고 있었음
× 권양은 너무 격분하여 당시 몸과 손이 뒤를려서 울게
말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다.

辯護士 朴 元 淳

× 문귀동의 명예훼손 고소장에는 " 6.7. 7:45 (불확실)부터 9:45까지 한번만 조사했다 "고 되어 있고 이는 영장집행 일시가 9:45으로 되어 있어 이와 함께 부합시키기 위해 기재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조사는 이영기 형사와 함께 조사했다고 하였으나 이영기라는 자의 얼굴을 보니 6.6. 새벽 조사받을 때 옆에 있던 자의 하나였다.

(3) 검찰의 조사태도

× 김수장 부장검사의 조사시 " 이 일이 아니었다면 기소유예 등 조치가 가능했다." " 처녀가 이런 일을 숨기지 고소할리가 있나,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 치밀하게 꾸민 것이 아니냐 "는 의문을 제기.

× 검찰 조사 당시에는 옥박지르지는 않았으나 형식적 수사에 그치고 있고 죄가 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음

× 권양이 " 진술, 정황이 문귀동과 내가 너무 다른데 내 정황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면 문귀동 이를 구속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김부장검사가 " 증거법상 목격자 없는 이상 구속시킬 수 없다 "는 대답

× 또한 권양이 " 상고문에 대해 보호해줄 법이 없느냐 "고 물었더니 김부장검사는 없다고 대답

2. 정황에 관한 입증 자료

(1) 문귀동은 했던 조사까지 안했다고, 완전히 허위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당시 유치장에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권양이 불타 나간 사실과 신고문 사실을 직후 전해 들은 사실이 있음

(2) 김철한

권양과 같은 공문서번조직로 들어와 있던 김철한에게 권양이 신고문 당했다는 사실을 6.7 저녁 뛰으면서 얘기해 준 사실 또한 그 당시 권양은 김철한에게 " 김철창으로 바로 송치되는냐고 물었더니 " 금방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여 실망과 함께 두려워 하게 됨

(3) 최옥자

부천 십곡동 삼익아파트 앞에 있는 수경다방 앞길 마담으로 일하던 여자로서 간통직로 들어와 보호실에서 권양과 같이 지냄. 권양이 그녀에게 담당 거참관이 발가벗기고 만지고 했다는 얘기를 하였음

(4) 박외숙

역시 간통으로 들어 왔던 아줌마로서 위 얘기를 들었음

(5) 이옥자

6.6. 밤 보호실에 들어와 6.7. 아침에 나간 여자로서 6.6.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고 6.7. 새벽 조사를 받으로 나간 것을 보았음

3. 기타

(1) "오히려 수사가 빨리 진행되어 어떠한 결론이든 검찰의 의견이 분명해 졌으면 좋겠다."

(2) 역사에 있는 11명은 모두 10일째 단식중이고 남사에 있는 70여명의 양심범들도 동조 단식하다가 중단되었다고 들었으나 계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3) 변호인 접견 이후 조사는 계속되고 더이상 접견은 없고 하여 변호인 선임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여 몹시 실망하였다고 하며 외부 소식에 궁금해 함.

4. 첨부 (심경회에 관한 메모)

심경에 관한 메모

지금 나는 쏠쏠하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단식 일흔째 쓰린 배를 움켜 쥐고 어지러운 머리 흔들면서 누워
있는 고도소 동지들이 목숨을 건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지, 이땅 어디
에도 들을 수 없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강제로 성적 추행을 당하고 그 통분한 현실 앞에
기어코 진실을 밝히려고 자 최후와 생존권마저 포기한 지 의미 일흔
이 지났습니다. 저 추악하고도 가증스러운 문귀동과 부천시는 온갖
허위 증거를 들이대며 오히려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
에서는 수사를 시작했다는 명목으로 지칠 대로 지친 저에게 아침
부터 밤 11시까지 끌려 다닐 것을 강요하고 증거법만을 강조하면서
문귀동을 구속시키기 어렵다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간악한
흉계에 새로운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파쇼정권의 살인적 고문에 수없이 유린당하고 짓밟히면서 심지어
목숨마저 빼앗긴 수많은 민주 영령들은 저들의 증거불충분이라는 명목
으로 한낱 거짓말이라고 몰아부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와 저의 고도소 동지들은 민주 영령들의 신음 소리가 들리는 듯
하여 이 분노를 그대로 삭힐 수가 없습니다. 차가운 고도소 마룻장을
베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마저도 저희들은 진실을 밝히려고 야
말 것입니다.

辯護士 朴元淳